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3	제 정 일 자	2013.08.28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015.12.22(1)	쪽 번 호	1 / 6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총칙	소음진동배출시설	법 2 조 규칙 별표 1	소음 : 압축기 등 소음배출시설 중 해당항목 진동 : 프레스 등 진동배출시설 중 해당항목	공기압축기, 프레스, 사출기 프레스, 사출기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소음진동관리 절차	
	소음진동방지시설	법 2 조 규칙 별표 2	소음 : 방음설시설 등 소음방지시설 중 해당 항목 진동 : 탄성지지시설 등 진동방지시설 중 해당항목	방음실 시설 탄성지지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소음진동관리 절차	
공장 소음진동 관리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법 7 조 규칙 별표 5	규칙별표 5: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1.소음: 공장소음배출허용기준이하일 것 2.진동: 공장진동배출허용기준이하일 것	신고시설 : 배출허용기준 준수		소음진동관리 절차 부지경계 소음.진동 성적서	
	배출 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설치허가	법 8 조 ① 영 2 조①, ② 규칙 제 9 조	영 2 조 ② 설치허가 대상 규모 1.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 미터 이내의 지역 2.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 미터 이내의 지역 3.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 미터 이내의 지역 4.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 미터 이내의 지역 5.주거지역 또는 제 2 종지구 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6. 100 명 이상인 노인전문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 미터 이내의 지역 7. 100 명 이상인 보육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 미터 이내의 지역		☐ 해당되지 않음 ☒ 관할관서에 허가 실시	
		설치신고	법 8 조 ① 영 2 조① 규칙 제 9 조	상기 허가대상 외의 시설		☐ 해당되지 않음 ☒ 관할관서에 신고 실시	
		변경신고	법 8 조② 규칙제 10 조 규칙별표 6	규칙 별표 6 : 변경신고대상 규모 1. 배출시설의 규모를 50/100 이상 증설 2. 사업장 명칭/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배출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발생시 및 1 회/연 이상 준수평가 후 해당 시 변경신고 실시	
		신고허가 제외지역	법 8 조③ 영 2 조④	영 2 조④ :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 1. 산업단지 2.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 4.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한 지역		해당 없음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3	제 정 일 자	2013.08.28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015.12.22(1)	쪽 번 호	2 / 6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공장 소음진동 관리	방지시설 설치		법 9 조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방지시설 설치 완료 1)소음 : 방음실 시설 2)진동 : 탄성지지시설		공사 사양서 공사 완료 보고서
	방지시설 설치 면제		법 9 조 규칙 11 조①,②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설치를 면제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배출시설의 기능.공정 또는 공장의 부지여건상 소음.진동 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더라도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 가 없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규칙 제 11 조 :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①공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다음의 시설이 없는 경우 1.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 제외).상가.학교.병원.종교시설 2. 공장 또는 사업장 3. 관광지 및 관광단지 4.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②제 1 항에 해당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 하여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함 1. 제 1 항 각호의 시설이 새로이 설치될 경우 2.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분쟁이 발생할 경우 3.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환경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해당 없음
	방지시설 설계·시공		법 11 조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사업자 스스로 설계.시공하거나 방지시설업자로 하여 금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공사계약서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법 14 조 규칙 별표 5	- 사업자는 다음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규칙별표 5 :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1. 공장소음배출허용기준 2. 공장진동배출허용기준				소음진동관리 절차 부지경계 소음.진동 성적서
공장 소음진동 관리	환경 기술 인	임명/자격기준	법 19 조 규칙 17, 18 조 규칙별표 7	- 법 19 조 :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환경기술인 자체임명 : 규칙 별표 7 의 1 에 해당 됨		환경기술인 선.해임 신고 소음진동관리 절차 등록
				- 규칙 별표 7 :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 2015.12.22				
				대 상 사 업 장 구 분		환 경 기 술 인 자 격 기 준		
				1.총 동력합계 3,760 kW 미만인 사업장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중에서 임명하는 자		
2.총 동력합계 3,760 kW 이상인 사업장		소음·진동기사 2 급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 인 이상 또는 당해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로 사업자가 임명하는 자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3	제 정 일 자	2013.08.28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015.12.22(1)	쪽 번 호	3 / 6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공장 소음진동 관리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규칙 18 조②	[규칙 18조]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환경기술인 : 주간점검 실시		환경주간점검표	
			규칙18조② 환경기술인의 관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음·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법 21 조 규칙 20 조 규칙[별표 8]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지역은 제외한다. 1.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 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2.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 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 미터 이내에 주택(폐가는 제외), 운동, 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②제 1 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제 1 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소음진동관리 절차 부지경계 소음·진동 성적서		
			규칙별표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이하일 것				
	특 정 공 의 사 전 신 고	사전신고	법 22 조① 규칙 21 조①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해당 없음 □관할관서에 신고 실시	
				□해당 없음 □관할관서에 신고 실시		□해당 없음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공사(土工事). 정리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공사 5. 영 제 2 조제 2 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별표 9]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 장비의 종류 1.항타기,항발기,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 제외) 2.천공기 3.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 4.브레이커(휴대용 포함) 5.굴삭기 6.발전기 7.로더 8.압쇄기 9.다짐기계 10.콘트리트 절단기 11.콘크리트 펌프			
	변경신고	법 22 조② 규칙 21 조④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 이상의 증가,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소음·진동 저감대책, 공사 규모의 10% 이상 확대 등 변경 사항이 있을 때		발생시 및 1 회/연 이상 준수평가 후 해당 시 변경신고 실시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3	제 정 일 자	2013.08.28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015.12.22(1)	쪽 번 호	4 / 6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방음시설의 설치	법 22 조③ 규칙 21 조⑤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 실시 -규칙[별표 10] :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	☐ 해당 없음 ☐ 방음시설 설치		☐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보칙	환경기술인 교육	법 46 조 규칙 64 조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 이수	3 년마다 1 회 이상		교육 수료증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3	제 정 일 자	2013.08.28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015.12.22(1)	쪽 번 호	5 / 6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별표 1] <개정 2015.12.22.> 소음·진동배출시설(제2조의2 관련)

1. 소음배출시설 가. 동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1) 7.5kW 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는 37.5kW 이상) 2) 7.5kW 이상의 송풍기 3) 7.5kW 이상의 단조기(기압식은 제외) 4) 7.5kW 이상의 금속절단기 5) 7.5kW 이상의 유압식 외의 프레스 및 22.5kW 이상의 유압식 프레스(유압식 절곡기는 제외) 6) 7.5kW 이상의 탈사기 7) 7.5kW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 8) 22.5kW 이상의 변속기 9) 7.5kW 이상의 기계체 10) 15kW 이상의 원심분리기 11) 37.5kW 이상의 혼합기(콘크리트프랜트 및 아스팔트프랜트의 혼합기는 15kW 이상) 12) 37.5kW 이상의 공작기계 13) 22.5kW 이상의 제분기 14) 15kW 이상의 제재기 15) 15kW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16) 37.5kW 이상의 인쇄기계(활판인쇄기계는 15kW 이상, 옴셋인쇄기계는 75kW 이상) 17) 37.5kW 이상의 압연기 18) 22.5kW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 19) 37.5kW 이상의 성형기(압출·사출을 포함) 20) 22.5kW 이상의 주조기계(다이캐스팅기를 포함) 21) 15kW 이상의 콘크리트관 및 파이프의 제조기계 22) 15kW 이상의 펌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하며, 「소방법」 제42조에 따른 소화전은 제외) 23) 22.5kW 이상의 금속가공용 인발기(습식선전기 및 합사·연사기를 포함) 24) 22.5kW 이상의 초지기 25) 7.5kW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비고 : 생략	나.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1) 100대 이상의 공업용 재봉기 2) 4대 이상의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3) 자동제병기 4) 제관기계 5) 2대 이상의 자동포장기 6) 40대 이상의 직기(편기는 제외한다) 7) 방적기계(합연사공정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대 이상으로 한다) 다. 그 밖의 시설 및 기계·기구 1) 낙하해머의 무게가 0.5톤 이상의 단조기 2) 120kW 이상의 발전기(수력발전기는 제외한다) 3) 3.75kW 이상의 연삭기 2대 이상 4) 석재 절단기(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7.5kW 이상으로 한정한다) 2. 진동배출시설(동력을 사용하는 시설 및 기계·기구로 한정한다) 가. 15kW 이상의 프레스(유압식은 제외한다) 나. 22.5kW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 다. 22.5kW 이상의 단조기 라. 22.5kW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마. 22.5kW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바. 37.5kW 이상의 성형기(압출·사출을 포함한다) 사. 37.5kW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아. 4대 이상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참고: 소음배출시설 및 진동배출시설의 시설 및 기계·기구의 동력은 1개 또는 1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비고 : 생략
---	--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3	제 정 일 자	2013.08.28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015.12.22(1)	쪽 번 호	6 / 6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별표 5] <개정 2015.1.2.>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제 8 조 관련)

1.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A)]				2.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V)]		
대 상 지 역	시간대별			대상 지역	시간대별	
	낮 (06:00 ~ 18:00)	저녁 (18:00 ~ 24:00)	밤 (24:00 ~ 06:00)		낮 (06:00 ~ 22:00)	밤 (22:00 ~ 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만 해당한다),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5 이하	60 이하
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다.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70 이하	65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5 이하	70 이하
마.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비고 : 생략		
비고 : 생략						